대한민국청소년의회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회 의 록

회의 일자	2024. 2. 17. 토	기록자(서기) 명	이서연
회의명	2월 상임위원회 회의	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
참 석 의 원			
의원장: 방인혜 간사: 심유민 서기: 이서연 안민준, 김태은, 황민혜, 한초연, 김민경, 박시우, 이정인, 조민준 (11) - 1차 줌 회의 후 김주리, 김연아, 조준영 참가 (14) - 불참 의원: 강하윤, 김 겸, 박지훈, 오지민, 홍재은, 김미소 (6)			
회의 주제 (안건명)	청원 안문에 들어갈 내용 검토 및 토의 1. 미성년자 선거운동 안건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안건		
회 의 내 용			

- 1월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선정된 두 대표 입법 청원안을 각각의 팀으로 나뉘어 자료조사 후 제안의 계기, 법안의 필요성 등을 나누고 청원 안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함.

1. 미성년자 선거운동 안건

안민준 의원(법안 제안자): 이 법안이 사회에서 필요한 이유와 계기 설명

내용 요약: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회에서 공식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함에도 미성년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됨.

성인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 처벌이 취약한 미성년자임에도 선거운동 시 처벌이 있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되어 만 14세 이상부터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온전한 정치 참여 문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결론: 연령 기준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었으나 여러 해외 나라들의 선거운동 규제 미정 사례와 과반수 이상의 투표(13/7)로 연령 제한 없이 미성년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기로 가결됨.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안건

이정인 의원: 가정 밖 청소년의 맞춤형 교육체계 지원 개정안 작성 후 설명

내용 요약: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과 쉼터 수 증가와 같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일반 학업 과정보다 실질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들이기에 정부는 정소년 자립 지원관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보호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에게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함.

- 가정 밖 청소년 지원팀은 이정인 의원의 개정안 외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의 후견인 변경안, 종합적인 교육 지원 체계 활성화 안건 등으로 다방면의 개정안이 준비되어 주제가 통합되지 않아 청소년 교육 위원회의 방향성에 맞게 교육(경제, 부동산, 노동법 등)을 초점으로 재진행하기로 결정.

[추후 일정]_ 3월 상임위원회 회의 전까지 해야 할 일:

1. 위원장님 작성하신 미성년자 선거운동 개정안 청원문 검토 및 다듬기 후 PPT 제작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안 청원 원문 내용 정리

2023. 2. 17. 토 13:00~14:30 [2월 상임위원회 줌 회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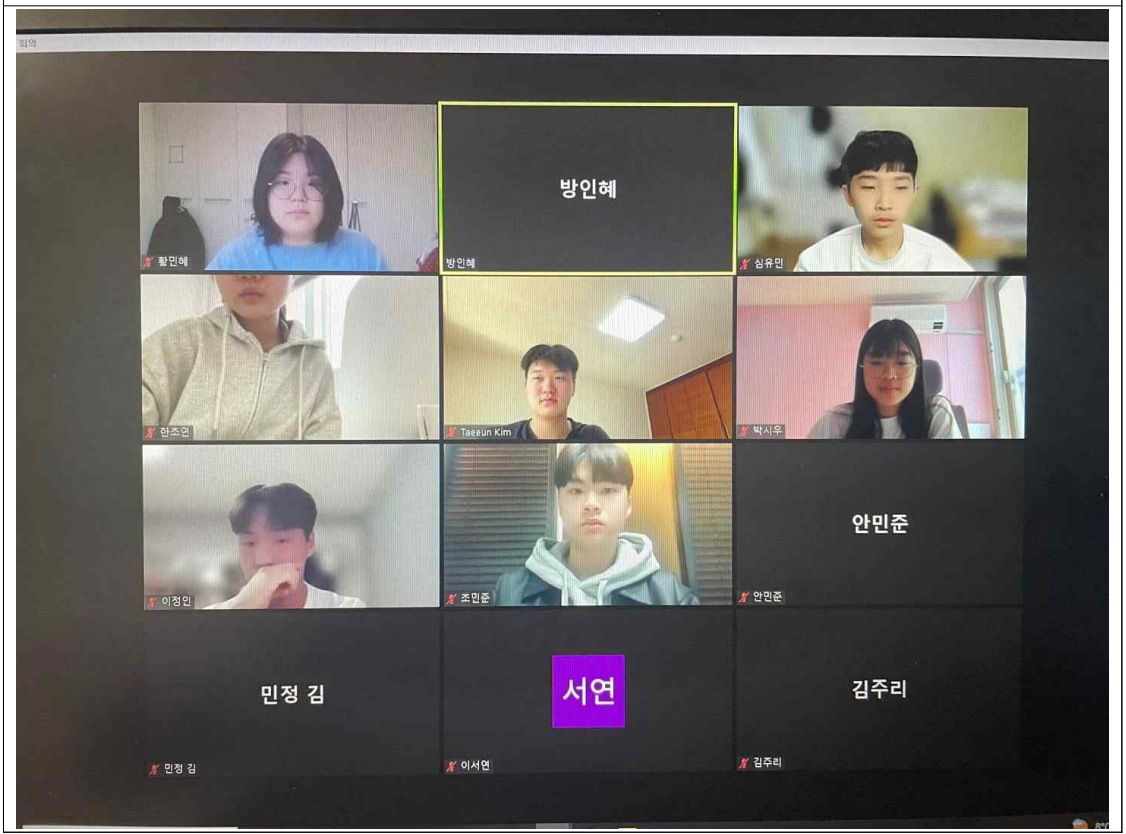

대한민국청소년의회
THE YOUTH NATIONAL ASSEMBLY OF REPUBLIC OF KOREA

청소년교육위원회 제 3 차 회 의 록

회의 일자	2024. 3. 31. 일	기록자(서기) 명	이서연
회의명	3월 상임위원회 회의	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
참 석 의 원			
출석 의원: 방인혜(위원장), 심유민(간사), 한초연, 이수진, 안민준, 황민혜, 홍재은, 김채환, 김연아, 황준호, 김주리, 김승희, 김지유, 박시우 (14) 제적 의원: 강하윤, 강혜원, 김겸, 김미소, 김태은, 김민서, 박지훈, 오지민, 이서연, 이정인, 조연서, 최이현 (12)			
회의 주제 (안건명)	본회의를 위한 두 대표 청원안문 피드백 및 수정		

회 의 내 용

[회의내용 요약]

- 두 대표 청원 안문 발표 후 구체적인 내용 검토 및 피드백 나눔 시간을 가진 뒤 이에 따라 청원 개정안을 수정함.

1. 미성년자 선거운동 안건

1-1) 미성년자 선거운동법 청원 발표

발표자: 안민준 의원 / 미성년자 선거운동 합법화를 위한 공식선거법 개정안 청원

- 문제점 제기:

미국 영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선진국은 선거운동에 대한 연령 규칙 부재.

반면 우리나라는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당사자를 직접 처벌. 청소년 보호법에는 청소년에게 유해 물질을 공급한 사람만 처벌하고 청소년은 처벌하지 않는 상태이기에 두 법률이 모순되는 상황.

미성년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미성년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부터 보호하려고 금지를 하는 건데 이해할 수 있으나 처벌제도가 있다면 이는 참정권의 침해이며 막연한 모순이라 판단됨.

- 법안의 효과: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들도 올바른 청치 운영에 기여될 수 있음.

- 청원 내용:

미성년자들의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되 반드시 선거운동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밤 10시가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 등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 추가 개정.

- 지난 회의 수정사항:

처음엔 만 14세 미만까지만 선거운동을 제한하자고 제안 -->
미성년자 선거운동 연령 제한을 아예 철폐하기로 의결.

1-2) 청원문 질의

김승희 의원: 선거 교육 제공자에 대한 질의

선거운동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는데 선거 교육을 누가 제공할지는 안 써도 되는 건지 질의.

∴ 자세한 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니 상세하게 쓸 필요 없다고 판단.

1-3) 청원문 수정 제의 사항

황준호 의원: 나이 제한 복원 제의

나이 제한이 없다라는 것은 이론상으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데 만약 어린아이들의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특징과 동정심을 활용해 표를 얻게 된다면 불합리할 수도 있음. 그렇기에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의 나이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

안민준 의원: 나이 제한 복원 반론

독일,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선거운동의 연령과 방식의 제한도 거의 없거나 관대한 편이며,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자도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청소년들을 위한 조건 사항도 있으니 문제 되지 않는다 생각.

황준호 의원: 많은 위험성을 가지고도 연령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합리적일지 의문 제기

선진국들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체계는 모두 다르기에 선진국에서 합법적인 것이 한국에서도 정당화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의견일 수 있음.

기본적으로 학생으로서 교육은 받지만 특히 미성년자들은 단순히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가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에 현재 사회에서도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

개인적으로는 연령 제한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이수진 의원: 황준호 의원의 의견에 동의 및 추가 언급과 연령선 하향 제의

연령선 하향을 형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나이를 적용한 만 14세에서 15세로 선정하길 제의. 초등학생의 경우 아직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정치 사상들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부모나 주위 지인들에 의하여 이용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방인혜 의원: 다른 이들의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언급

만약 고등학교 1학년을 기준으로 선정한다면 이 청원 논문을 제안했을 때 이 연령이 기준이 되는 이유를 묻는다면 어떤 응답을 할 예정인지 질문.

안민준 의원: 방인혜 의원의 질의에 이어 나이 제한 철폐 이유 설명

원래는 만 14세로 연령 제한을 두고 제안을 했는데 지난 회의 때 선진국들은 나이 제한이 없고 제한이 있다고 해도 더 어린 연령들도 차이점이 없게 느껴져 아예 철폐를 시킨 것으로 의결된 것.

우리나라가 정치 시스템 문화가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발전이 느리기 때문에 바꿔나갈 생각으로 이 법안을 작성한 것.

∴ 황준호 의원의 의견 참고 후 팀원들과 의논해보기로 가결.

2.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안건

2-1)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과 관심 확대를 위한 청소년 복지법 개정안 발표

발표자- 홍재은 의원 / 청소년 복지법 지원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결.

- 문제점 제기:

이미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정부는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을 실행 중이지만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쉼터는 전체 가정 밖 청소년 규모의 1%도 되지 않는 상황.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쉼터의 수를 증가를 시키거나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캠페인 등이 실행되고 있지만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알맞는 교육 체계가 부재중.

가정 밖 청소년들은 일반 학업적 과정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기에 그들의 삶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

- 법안의 효과: 학습 단절을 극복하고 사회적 적응을 위한 진로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직업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

- 청원 내용:

정부 및 지자체는 현행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통해 위기 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뿐만 아니라 위기 청소년에게도 상담 및 위기 청소년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청소년 자립지원관으로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으로 청원.

-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체계 예시: 대안 교육 기회 혹은 교육 지원 활성화

- 교육 체계 지원 분야:

(1) 문해력, 수리력 향상 교육

(2) 경제 및 취업 관련 교육 제공

(Ex.) 기본적인 경제 개념 및 관리, 직업 탐색 및 진로 계획, 실무 기술 교육, 취업 준비 지원 등

(3) 학교 적응 교육 프로그램- 학교에서 방과 후 시간에 개인 멘토링 수업을 제공

(Ex.) 학교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

- 이 교육 체계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이유:

현재 가정 밖 청소년들이 여러 상황 속에서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적인 생활 기술과 학문적인 기술을 갖추지 못한 채 사회로 나오는 형상이 다분하여 이에 심각성을 느껴 이러한 교육 체계를 마련.

일반적인 학교 시스템은 일부 청소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으나 모든 가정 밖 청소년들이 같은 경로를 따라 학습과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은 아니기에 이 체계를 통해 단순히 교육적 지원을 넘어서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자립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그들의 더 나은 미래와 경제적인 삶의 안정성과 번영에 기여할 거라 생각.

모든 청소년이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

교육 지원은 청소년들이 직면한 도전과 상황을 인정하고 그들이 필요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춤.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사례:

Childhope Philippines: 거리 아이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중도 탈락 청소년들에게 교육, 심리, 사회적 개입, 건강 및 의료 서비스 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2-2) 청원의 이유 중 문제점 수정 제의 사항

김승희 의원: 청원 이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모순 수정 제의

문제점은 청소년 쉼터가 없다는 점인데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은 대부분 교육을 받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태이기에 문제를 제기할 때 청소년 쉼터가 없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육의 기회가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길 희망.

∴청원 이유에서 가정 밖 청소년에 알맞는 교육 체계의 부재와 문제점에 집중을 한 후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알맞는 대안 교육 체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제기를 하며 그러한 효과를 강조를 하는 것으로 의결.

2-3)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기타 교육 체계 추가 제의 사항

한초현 의원: 고용법 관련 교육 추가 제의

김승희 의원: 직업 훈련이나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교육 추가 제의

홍재은 의원: 청원문엔 경제 및 취업 관련 교육 제공에 대한 체계가 이미 있는 상태이며 두 의원분의 제안은 이곳에 해당될 것이라 추측.

∴ 이미 포괄적인 의미의 교육 체계를 기입했기에 두 교육 모두 그곳에 포함하기로 의결.

이수진 의원: 의료 사각지대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한 기초 보건 피임 관련 교육 추가 제의

2-4) 현행법 개정안 수정 제의 사항 (1)

한초현 의원: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한 제의

개정안에 정부 및 지자치단체는 위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청소년 자립 지원관으로부터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서술되어 있으나 청소년 자립 지원관 말고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다양할 것 같은데 하나로 한정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을 듯함.

홍재은 의원: 이에 다른 교육 기관 추가 요청

- 대안교육 기관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

한초연 의원: 기타 기관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

∴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대안교육 기관 및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과 기타 다른 기관도 모두 포함하기로 의결.

방인혜 의원: 추가 질의

청소년 자립지원관 등 앞에서 나왔던 교육 기관에선 현재 실시하는 교육 수업이 없는 상태인지 질문

홍재은 의원: 기본적인 교육 지원 실시 및 있음에도 열약한 제공 상태 언급

자료 조사한 결과 굉장히 기본적인 지원 같은 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대안학교 같은 경우 위기 청소년들 및 몸이 불편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따로 교육을 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안 교육 학교라는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 교육을 따로 제공을 하는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음.

현행법 개정안 수정 제의 사항 (2)

한초연 의원: 가정 밖 청소년 쉼터 수 증가 관련 개정안 추가 요청

앞서 열약한 쉼터 수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으나 교육 기관은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한다 라는 청원을 해야하니 부족한 쉼터의 수도 증가를 시켜야 한다라는 개정도 포함시키길 제안.

심유민 의원: 그냥 교육에 초점을 맞추길 희망

첫 번째 상임위원회 회의 당시에 원래 쉼터 지원도 포함해서 지원하기로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은 통합 위원회에서도 다룰 수 있으니 쉼터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그냥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깔끔할 것 같다 제기.

홍재은 의원: 심유민 의원의 의견과 더불어 기관의 다름 언급

쉼터와 교육 체계를 지원을 하는 기관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음. 쉼터 같은 경우 가정 밖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 받고 거주도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곳.

별도의 교육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곳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쉼터를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지 않고 교육으로 목적을 두는 것이 훨씬 적합하다 생각.

∴ 별도의 추가적인 개정안 없이 교육을 중심으로 청원하기로 의결.

2-5) 청원명 수정 제의 사항

홍재은 의원: 교육 지원에 초점을 둔 청원명으로 제의

청원명 중 관심 확대를 위한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교육 지원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개정안이 적합하다고 생각.

∴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과 관심 확대를 위한 청소년 복지법 개정안 -->
가정 밖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청소년 복지법 개정안으로 의결.

[추후 일정]_ 본회의 전까지 해야할 일:

1. 회의내용을 토대로 두 대표 입법청원안 최종 수정 및 청원서 작성
2. 본회의를 위한 각 개정안 PPT 제작 작업

2024. 3. 31. 일 17:00p.m.~19:30p.m. [3월 상임위원회 1차 줌 회의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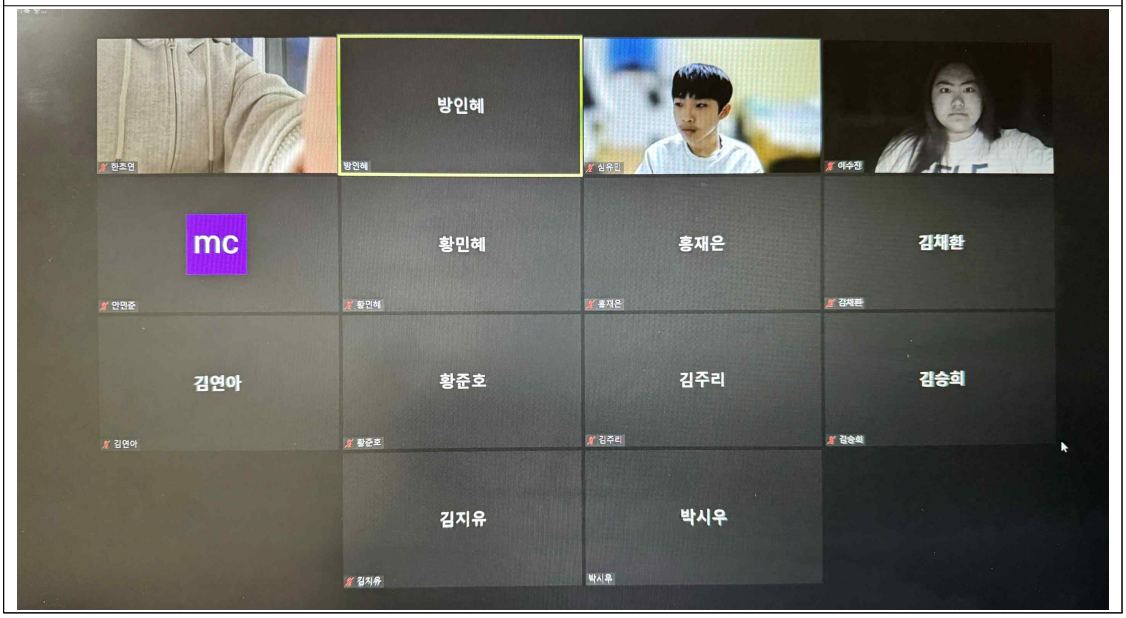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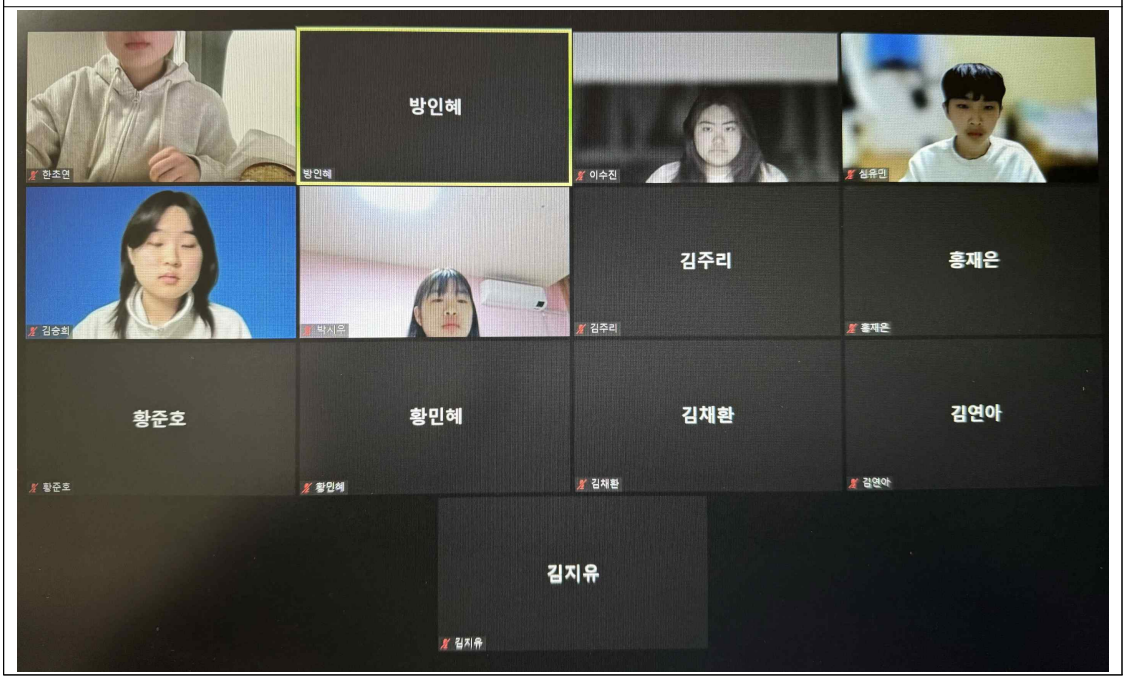
[2차 줌 회의 사진]